

■ 최신 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1869호, 2013. 6. 4., 일부개정, 시행 2013. 6. 19]

1. 개정이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총자산의 전부를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 공모 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총자산의 전부를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 공모 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4조의8 제3항 제2호, 제16조 제3항 신설). 다만, 이러한 면제규정은 개정 후 최초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부칙 제2조).

3. 다운로드 : [부동산투자회사법](#)